

각 서

- 계약건명 : 2018년 금융교육 교재개편(1~3단계 제작)
- 계약금액 : 금 일천오백팔십사만 원정(₩ 15,840,000)
- 선금신청액 : 금 일천일백팔만팔천 원정(₩ 11,088,000)

1. 수령한 선금은 노임지급 및 자재확보 등 당해 계약목적 달성을 위한 용도 이외의 다른 목적에 사용하지 않겠으며, 선금전액을 사용한 후에는 해당 증빙자료를 첨부한 사용내역서를 귀 기관에 제출하겠습니다.
2. 선금을 전액 정산하기 이전에는 계약에 의하여 발생한 권리 의무를 제3자에게 양도하지 않겠으며(단, 보증기관의 동의를 얻어 공사대금청구권을 양도하는 경우는 예외로 함), 선금의 정산에 대하여는 귀 기관의 결정에 따르겠습니다.
3. 선금을 지급한 이후에 계약의 해제 또는 해지, 선금지급조건 위배, 사고이월 등으로 반환이 불가피한 경우, 정당한 사유없이 선금수령일로부터 10일 이내에 선금을 배분하지 않은 경우와 같은 각각의 반환사유 발생시 귀 기관의 반환청구(반환금액의 결정, 반환기한의 지정 및 반환조건 등)에 전적으로 따르겠으며, 특히 본인의 귀책사유에 의하여 말미암은 경우에는 당해 선금잔액에 대한 이자상당액을 가산하여 반환하도록 하겠습니다.
4. 본인은 선금 수령사실을 5일 이내에 공동수급체 구성원 및 하수급업자에게 서면통지하고, 선금수령일로부터 10일 이내에 공동수급체 구성원 또는 하수급업자에게 선금을 배분하겠으며, 만약 본인이 선금 배분의무를 이행하지 않았을 경우 발주기관에서 당해 선금을 회수하여 공동수급체 구성원 또는 하수급업자에게 직접 지급하더라도 이의를 제기치 않겠습니다.
5. 선금반환사유가 발생할 경우 본인이 제출한 선금보증서를 통하여 선금환수절차가 진행됨을 깊이 인식하고 그에 따른 발주기관의 환수조치에 적극적으로 협조하겠습니다.
6. 상기내용 이외에는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 기준」 제6장 선금·대가 지급요령(행정안전부 예규 제404호, 2012. 3. 22)의 규정을 준수하겠으며, 기타 선금지급에 대한 여하한 사항에 대하여도 귀 기관의 결정 또는 요구에 따르겠습니다.

2017 . 9 . 19 .

주 소 : 서울특별시 관악구 행운동 1680-11 3층 c34
상 호 : 한국금융교육진흥 주식회사
대 표 : 이 영 응



첨부: 이행 보증보험증권 또는 보증서 1부.

재단법인 서울시복지재단 대표이사 귀하